

e-NH연금저축보험 (무배당)_2404

돌려받는 연말정산
쌓여가는 노후자금



**모바일로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 최대
99만원까지
돌려받자!**

매년 최대 **99만원** 세금 돌려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연금저축보험 가입해
세액공제 받기

연금저축보험 월 **50만원** 납입
(최대 연 600만원 한도)

최대 세액공제
600만원 × 16.5%
(지방소득세 포함)
▼
99만원

※ 당해년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600만원 한도(연금저축계좌합산)로 납입금액의 16.5% 또는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

 연 600만원 납입시 세액공제 효과

기준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세액공제율		16.5% (지방소득세 1.5%포함)	13.2% (지방소득세 1.2%포함)
월납입액	연간납입액	세액공제금액	세액공제금액
50만원	600만원	990,000원	792,000원
34만원	408만원	673,200원	538,560원
30만원	360만원	594,000원	475,200원
25만원	300만원	495,000원	396,000원
20만원	240만원	396,000원	316,800원
10만원	120만원	198,000원	158,400원

※ 상기 세액공제금액은 세법 제·개정 및 폐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NH연금저축보험(무배당)_2404



세액공제 혜택



당해년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600만원 한도(연금저축 계좌 합산)로 납입금액의 16.5% 또는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

※ 단,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 인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이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세(3.3~5.5%,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납입하여야 함

추가납입기능으로 납입의 유연성



기본보험료 이외에 추가적으로(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 이내) 보험료 납입 가능

※ 추가납입 시 계약관리비용 차감

보험료 납입유예(납입의 일시중지)



보험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이후 보험료의 납입유예 가능
(단, 1회 신청당 1년, 최대 3회 가능)

※ 납입유예 신청 시, 연금개시시점이 연기될 수 있음

연금액 예시

기준 : 40세 남자, 60세 연금개시, 월납 기본보험료 50만원, 10년납, ※ 이율기준 : 연단위 복리, 공시이율 : 2024년 12월 2.40%(매월 변동), 평균공시이율 : 2024년 기준 2.75%, 단위 : 만원미만 절사

구분		최저보증이율 가정	평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가정(2.40%)	공시이율(2.40%) 가정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액		6,346 만원	8,222 만원	8,222 만원
 종신연금형	10년 보증	매년 196 만원	매년 346 만원	매년 346 만원
	20년 보증	매년 193 만원	매년 341 만원	매년 341 만원
	30년 보증	매년 185 만원	매년 329 만원	매년 329 만원
 확정기간 연금형	확정기간 10년	매년 645 만원	매년 908 만원	매년 908 만원
	확정기간 15년	매년 435 만원	매년 640 만원	매년 640 만원
	확정기간 20년	매년 330 만원	매년 507 만원	매년 507 만원
	확정기간 30년	매년 226 만원	매년 376 만원	매년 376 만원

- 주) 1. 상기 예시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은 「경과기간별 최저보증이율」, 「2024년 현재 평균공시이율과 2024년 12월 현재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2024년 12월 현재 공시이율 (연단위복리 2.40%)」, 기준으로 해당 이율이 계속 유지됨을 가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
2. 상기 예시된 연금액은 「연금개시시점 최저보증이율」, 「2024년 현재 평균공시이율과 2024년 12월 현재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2024년 12월 현재 공시이율(연단위 복리 2.40%)」, 기준으로 해당 이율이 유지됨을 가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
3. 상기 예시된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연금액은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임을 가정[단,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은 경과기간별 최저보증이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최저보증 연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연금액은 공시이율 변동 등에 따라 상기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4. 공시이율은 매월 1일에 회사가 운전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일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매 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현재 기준 공시이율은 2.40%이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 1.0%, 가입 후 10년 초과 0.5%입니다.)
5.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2024년) 평균공시이율은 2.75%입니다.
6.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으로 합니다. [단, 보험료 납입유예 또는 1회 기본보험료만 납입한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금개시 시점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7.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계약자가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합계를 말하며, 연금계좌에서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8. 종신연금형(자유설계연금형에서 연금분할비율에 의해 계산된 종신연금 해당부분 포함)의 경우 연금개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9. 계약체결 시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으로 결정되며, 이후에 연금개시 전까지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은 공시이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은 세전 금액이며,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장내용(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구분	연금 지급예시	지급금액
종신연금형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과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나누어 계산한 연금액을 매년 연금해당일에 생존시 종신토록 지급 (10년, 20년, 30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보증 지급) • 연금개시 후에는 해지 불가
확정기간 연금형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나누어 계산한 연금액을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기간동안 매년 연금해당일에 지급
자유설계 연금형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분할비율로 분할하여 종신연금형과 확정기간연금형으로 조합한 연금형태(종신연금은 종신연금형에서 보증지급기간 선택이 가능하며, 확정기간연금은 확정기간연금형에서 연금지급 기간 선택가능) • 연금분할비율에 의해 계산된 종신연금 해당부분의 경우, 연금개시 후에는 해지 불가

※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동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연금지급형태 및 보험기간

연금지급형태	보험기간
종신연금형 (10년, 20년, 30년 보충지급)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확정기간연금형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종신연금형 / 자유설계연금형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확정기간연금형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까지
자유설계연금형	

보험료 납입기간 · 연금개시나이 · 연금지급방법 · 납입주기

납입기간	연금개시나이	연금지급방법	납입주기
5 / 7 / 10 / 15 / 20년납, 전기납(10년납 이상)	만 55세 ~ 80세	매월, 3개월, 6개월, 매년	월납

※ 변경 전 납입기간과 변경 후 납입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납입기간 완료 전까지 납입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5/7년납의 경우 납입기간 변경불가)

가입나이 · 납입기간 후 거치기간 · 납입보험료 한도

실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기간 후 거치기간	납입보험료 한도
5년납	만 19세 ~ (연금개시나이 - 보험료 납입기간)세	0년	13만원 ~ 150만원
		1년 / 2년	8만원 ~ 150만원
		3년 이상	6만원 ~ 150만원
7년납		0년	6만원 ~ 150만원
		1년 이상	5만원 ~ 150만원
10년납 이상		0년 이상	5만원 ~ 150만원

※ 실납입기간은 실제 납입한 기간을 의미하며 전기납의 경우 「연금개시나이 - 가입나이」로 계산합니다.

※ 납입기간 후 거치기간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 실납입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기본보험료는 만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보험료 세액공제

당해년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600만원 한도(연금저축계좌합산)로 납입금액의 16.5% 또는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단,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 과세)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초과 (5,500만원 초과)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16.5%	13.2%
세액공제대상 납입액	600만원	600만원

- ※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적용)
- ※ 단,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 인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이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세(3.3~5.5%,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납입하여야 함

연금수령조건 · 연금수령 해당금액 과세 · 기타안내

구분	내용
연금수령 조건	① 연금수령 :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거나, 의료비 인출 또는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하는 인출 ② 연금수령조건 : 만 55세 이후 가입일로부터 5년 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 (단, 계약자의 연금수령개시 신청 후 연금수령 가능) ③ 의료비 인출 : 연금개시후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미 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연금 계좌에서 인출하는 것 ※ 의료비 연금계좌는 1인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며, 의료비 연금계좌에서 의료비 인출을 하려 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 인출 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연금소득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한 도 =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 (11 - 연금수령연차) X 120% ※ 과세기간개시일은 연금수령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신청일 기준이며, 연금수령 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부터는 1월 1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연금수령 해당금액 과세	①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연금 소득 연 1,500만원 이하 限) • 연금수령나이 55세 이상 70세 미만 : 중신 외 연금 5.5% • 연금수령나이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연금수령나이 80세 이상 : 3.3% ※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 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함
기타안내	① 연금수령 미해당금액 과세 : 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1.5%포함) 과세 ② 계약승계 관련사항 : 계약자 사망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관련 세법에 따라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음 ※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③ 종합소득세신고 :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외) 총액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종합과세 선택시)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40세 남자, 60세 연금개시 월납, 기본보험료 50만원, 10년납, ※ 이율기준 : 연단위 복리, 공시이율 : 2024년 12월 2.40%(매월 변동), 평균공시이율 : 2024년 기준 2.75%, 단위 : 만원미만 절사

경과 기간	납입보험료 누계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평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가정시(2.40%)		공시이율 가정시 (2.40%)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600만원	575만원	95.9%	579만원	96.6%	579만원	96.6%
3년	1,800만원	1,744만원	96.8%	1,781만원	98.9%	1,781만원	98.9%
5년	3,000만원	2,935만원	97.8%	3,042만원	101.4%	3,042만원	101.4%
7년	4,200만원	4,151만원	98.8%	4,363만원	103.8%	4,363만원	103.8%
10년	6,000만원	6,061만원	101.0%	6,507만원	108.4%	6,507만원	108.4%
20년	6,000만원	6,346만원	105.7%	8,222만원	137.0%	8,222만원	137.0%

- 주) 1.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공시이율로 적립하므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2. 상기 예시금액은 「경과기간별 최저보증이율」, 「2024년 현재 평균공시이율(2.75%)과 2024년 12월 현재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2024년 12월 현재 공시이율(연단위복리 2.40%)」 기준별로 해당 이율이 유지됨을 가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
- 2024년 12월 현재 기준 공시이율은 2.40%이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 연단위 복리 1.0%, 10년 초과시 연단위 복리 0.5%입니다.
 - 감독규정 제 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2024년) 평균공시이율은 2.75%입니다.
3. 실제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시 해약환급금도 변동됩니다.
4. 공시이율은 매월 1일에 회사가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여 매 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 상기 예시된 금액은 세전 금액이며, 추가납입 등에 따라 변동되므로 실제 받으실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상기 환급률은 「경과기간별 최저보증이율」, 「2024년 현재 평균공시이율(2.75%)과 2024년 12월 현재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2024년 12월 현재 공시이율(연단위복리 2.40%)」 이 경과기간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의 비율입니다.



추가납입

- ① 납입시기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수시납입)
- ② 총한도 :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내(최저 1만원이상)
 - ※ 다만,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 합계액)은 1,800만원 이내로 합니다.
 - ※ 추가납입보험료는 회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관리비용이 차감된 후 적립됩니다.
- ③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은 해당월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 가능



보험료 납입유예

- ① 보험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이후 보험료 납입종인 계약에 한해 기본보험료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납입유예 신청은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신청일부터 1년간 보험료의 납입중지가 가능합니다.
- ③ 납입유예 신청시 기본보험료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장됩니다.
- ④ 납입유예기간 동안 해당월의 계약관리비용(납입 후 유지관련비용)이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됩니다.
- ⑤ 납입유예 신청 시 연금개시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 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필서명 및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중요성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 서명 란에 반드시 본인인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민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한 날부터 45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계약 및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의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감액에 대한 안내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품질보증 해지에 관한 사항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 (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돌려드립니다.

◇ 적용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이 보험계약의 계약자적립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은 공시 이율이며,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등에 따라 매월 변동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 연단위 복리 1.0%, 10년 초과 연단위 복리 0.5%입니다.

◇ 보험계약자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이 연금저축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다른 보호 상품과 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대상 연금저축과 합산)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 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해당 판매사는 농협생명 등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방카슈랑스 부조리 신고센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출과 연계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도록 한 후 새로운 보험계약의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홈페이지 www.fss.or.kr

제휴보험사 준비 심의필 : 준법202412-074(2024.12.18~2025.12.17)

제작 : 농축협사법부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 세제혜택

※ 연금저축은 당해년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600만원 한도(연금저축계좌 합산)로 납입금액의 16.5% 또는 13.2% (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이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등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 인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이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세(3.3~5.5%, 지방 소득세 포함,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충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기존계약 해지후 신계약 체결시 불이익의 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보험상담안내 및 분쟁조정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인원)이 있을 경우 NH농협생명 내망같은 고객센터(1544-4000) 또는 홈페이지(www.nhife.co.kr)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또한 NH농협생명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한 안내

본 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nhife.co.kr(당사홈페이지)
- 보험상품 비교 공시 : www.kia.or.kr(생명보험협회)

※ NH농협생명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대리점 등록번호 2003091001